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8
------	-----

2022. 9.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도의 안분액 × (35/100)

2) 출연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출연 근거 규정이 있는 법정 출연금

-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출연 사무 내용

1)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2)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및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의 인수 등

라. 출연 기관 개요

- 1)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13층)
- 3) 규 모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

구 분	정·현원	인원수	세부 내용
조합위원	정원	20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현원	20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사무직원	정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2인)
	현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2인)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실 면적 : 108.9㎡(33평, 임차 사무실)

4) 위 치 도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 2023년 출연금 편성액(안) : 2,839억 3백만원

※ 2023년 지방소비세 추계에 근거한 잠정액으로서 차후 변동 가능

2) 2023년 산출근거(안)

- 6,814억원(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35% + 2021년 기금
정산분 454억 1천 3백만원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인상 10%분(약 9.9조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약 4.5조원)을 제외한 잔여분(약 5.4조원)에
서울시 안분율(12.724%) 적용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서울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배경과 운용 현황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지역으로 배분하여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¹⁾의 35%를 매년 출연하고 있음.

1)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에서 시작해 11%(2014), 15%(2019), 21%(2020), 25.3%(2022)로 상향되었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함.

-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공사채의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지방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에 사용함.
- 기금계정은 2015년부터 ‘재정지원계정’ 과 ‘용자관리계정’ 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를 각각 배분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환사업보전계정’ 이 신설되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음.

<기금 용도별 계정 현황>

계정	재원	도입	세부내용	배분
재정지원	출연금 50%	2010년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 사업 재정지원	재정여건 등
용자관리	출연금 50%	2015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용자지원	
전환사업보전	지방소비세 3.6조	2020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보전	국가 균특회계 이양사업 규모

-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²⁾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됨.
-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7,392억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2조 1,378억원을 출연하고, 2,345억원(재정지원 1,227억원, 용자지원 577억원, 전환사업보전 564억원)을 배분받음.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중앙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국세(7) 대 지방세(3) 비율 개선 등을 추진함.

<서울시의 기금 출연 및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	21,378	1,497	1,627	1,644	1,681	1,745	1,675	1,755	1,967	2,000	2,097	1,923	1,767	2,268
배분	2,345	107	119	135	143	147	146	154	164	175	179	447	429	1,336
재정지원	1,227	107	119	135	143	147	73	77	82	87	90	83	73	87
용자지원	577	-	-	-	-	-	73	77	82	88	89	83	73	87
주) 전환사업보전	564	-	-	-	-	-	-	-	-	-	-	281	283	1,162

주) 2020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분에 대한 재정지원(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다. 기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

- 2023년도 기금 출연금은 서울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 (6,814억원)의 35%에 2021년 기금 정산분(454억 1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2,839억 3백만원임(2023년 지방소비세 추계에 근거한 잠정액).

<기금 출연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	-	균특회계 사업이양 보전	-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x	서울시 안분율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9.9조원		3.6조원		0.9조원		12.724%		6,814억원

- 출연금 규모는 2019년 2,097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 소비가 위축되면서 2020년 1,923억원, 2021년 1,767억원으로 감소되었다가 올해 2,268억원으로 증가함.
- 기획재정부의 '2022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소비·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5조 5천억원 늘어난 62조 9천억원이 견힐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을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쇠퇴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기업 유치 및 투자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 기금이 도입되었으나, 배분 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지방세법」 2022.1.1. 시행)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이 25.3%로 4.3%포인트 인상되면서 기금 안분액도 증가하여 수도권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에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류함(2022.7.11.).
- 한편, ‘20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³⁾ 결과에 따르면, 시도가 수행한 총 57개의 기금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가 23개(40.35%)로 가장 많고, 산업·중소기업분야 18개(31.58%),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국토·지역개발분야 각각 8개(14.04%)로 보고됨.

3)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1조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제27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수행함.

- 2021년 기금사업은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된 특징이 있음.

<2021년 기금사업의 분야별 사업현황>

시도	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지역개발
서울	1	1			
부산	2				2
대구	1	1			
인천	2				2
광주	1	1			
대전	4	2		2	
울산	6	2	1	2	1
세종	3	1		1	1
경기	5	2	2	1	
강원	4	1	2	1	
충북	6	1	2	2	1
충남	1	1			
전북	6	3	1	2	
전남	11	4		7	
경북	1				1
경남	1	1			
제주	2	2			
계	57	23	8	18	8
구성비(%)	100	40.35	14.03	31.58	14.04

- 이처럼 기금이 지역발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사회복지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지역개발분야는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적합한 사업발굴과 추진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2) 출연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출연 근거 규정이 있는 법정 출연금
-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출연 사무 내용

- 1)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및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의 인수 등

라. 출연 기관 개요

- 1)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층)
- 3) 규 모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

구 분	정·현원	인원수	세부 내용
조합위원	정원	23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균형발전전문가(2인)
	현원	23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균형발전전문가(2인)
사무직원	정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2인)
	현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2인)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실 면적 : 108.9㎡(33평, 임차 사무실)

4) 위치도



<위 치 도>



<지방재정회관 건물>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2023년 출연금 편성액(안) : 283,903,009천원

※ 2023년 지방소비세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잠정액으로서 추후 변동 가능

2) 2023년 산출근거(안)

- 681,400,000천원(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35% + '21년 기금 정산분
45,413,009천원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인상 10%분(약 9.9조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
(약 4.5조원)을 제외한 잔여분(약 5.4조원)에 서울시 안분율(12.724%)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재정담당관 보조금관리팀 김수진 (☎ 2133-6883)